

새로운 외국인주민제도가 시행됩니다!

2012년 7월 9일(월)부터 기존의 외국인등록제도가 폐지되고 외국인 주민도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주민표가 작성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주민의 거주 증명은 '외국인등록원표 기재사항증명서'로 했습니다만, 2012년 7월 9일 이후에는 새롭게 일본인과 동일한 '주민표 사본'이 교부됩니다. 일본인과 같은 세대에 살고 있는 외국인 주민은 세대 전원의 주민표 사본에 함께 기재됩니다.

■ 주민표에 기재되는 분은?

주민표에 기재되는 외국인 주민은 다음 ①~④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분입니다.

- ① '3개월' 이하의 체류기간이 결정된 분
- ② '단기체류'의 체류자격이 결정된 분
- ③ '외교' 또는 '공용'의 체류자격이 결정된 분
- ④ 체류자격을 갖추지 않은 분

■ 주민표 사본

주민표(주민기본대장)는 여러분의 주소 및 전입·전출 상황, 가족 구성 등을 기록·증명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개호보험 등 행정 서비스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 수속을 하는 사람: 본인 및 동일 세대원(대리인인 경우는 위임장 필요)
- 지참물: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것(외국인등록증명서 또는 체류카드·특별 영주자 증명서 등)
- 수속 장소: 시민과(타나시 청사·호야 청사), 히바리가오카역 앞 출장소, 야나기바시 출장소
- 수수료: (창구) 1통당 300엔, (주민표 등 자동교부기) 1통당 200엔
 - * 주민표 등 자동교부기를 이용하려면 비밀번호를 등록한 니시도쿄 시민카드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십시오.
- 문의: 시민과(타나시 청사·호야 청사), 히바리가오카역 앞 출장소, 야나기바시 출장소

■ 주소 변경

2012년 7월 9일(월) 이후 주민표에 기재된 외국인 주민이 주소를 변경할 때는 다음과 같은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 【전거】 니시 도쿄시 내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새 주소에서 살기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명서(또는 체류카드·특별 영주자 증명서)를 지참하여 시민과에 '전거 신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 【전출】 니시 도쿄시에서 다른 시구정촌으로 주소를 변경할 경우

새 주소가 결정되면 이사 예정일의 대략 2주 전부터 시민과에 '전출 신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전출 증명서'를 무료로 교부합니다.

◇ 【출국·해외 전출】 니시 도쿄시에서 해외로 이사할 경우

해외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되면 이사 예정일의 대략 2 주 전부터 시민과에 '전출 신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 【전입】 다른 시구정촌에서 니시 도쿄시 내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니시 도쿄시로 이사를 오면 이전 주소지의 시구정촌이 발급한 '전출 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명서(또는 체류카드·특별 영주자 증명서)를 지참하여 새 주소에서 살기 시작한 날부터 14 일 이내에 '전입 신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 국민건강보험

- 대상자: 회사 등의 건강보험 및 그 부양,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분 등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 주민.

TEL : 0 4 2 - 4 6 0 - 9 8 2 2

□ 주요 변경사항

체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분이 대상이 되었습니다(의료 목적인 분은 대상 외).

* 체류기간이 3개월 이하인 분이라도 자료를 통해 3개월을 초과하여 체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후기 고령자 의료

- 대상자: 75세 이상인 분 및 65세 이상으로 일정한 장애가 있는 분(신청을 통해 도쿄도 후기고령자 광역연합에서 인정받은 분)으로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분 등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 주민.

TEL : 0 4 2 - 4 6 0 - 9 8 2 3

□ 주요 변경사항

체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분이 대상이 되었습니다(의료 목적인 분은 대상 외).

* 체류기간이 3개월 이하인 분이라도 자료를 통해 3개월을 초과하여 체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개호보험

- 대상자: 65세 이상의 외국인 주민 또는 40~65세 미만의 특정 질병이 있는 외국인 주민 (생활보호 수급자 제외).

TEL : 0 4 2 - 4 3 8 - 4 0 3 1

□ 주요 변경사항

체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분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 체류기간이 3개월 이하인 분이라도 자료를 통해 3개월을 초과하여 체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 의료지원

건강보험에 가입한 0세~중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연령의 어린이로 본 제도의 의료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경우는 신청해 주십시오.

* 필요한 서류는 아래로 연락해 주십시오.

TEL : 0 4 2 - 4 6 0 - 9 8 4 0